

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

대 의 원 선 출 규 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17조와 제20조에 의하여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대의원) 대의원이라 함은 회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, 회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 대표를 말한다.

제3조(대의원 정수)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하되 매년 이사회에서 그 정수를 정한다.

제4조(대의원 임기)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5조(대의원 선출방법) 대의원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.

1. 임원(이사 및 감사)과 사무처 상근활동가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
2.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역조직과 부문조직별로 배정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한다.
3. 회원은 회원 3인의 추천으로 대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으며 총회 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제6조(대의원의 요건) 대의원은 총회가 결의한 사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
제7조(대의원 선출시기 및 통지)

- 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.
- ② 대의원으로 선출된 회원에게는 총회 개최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